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진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68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0일
발 의 자 : 정진술 의원(1명)
찬 성 자 : 김기대, 김상진, 김수규,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노승재,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송명화, 양민규, 임종국,
최웅식,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의원(19명)

1. 제안이유

- 2021. 5. 18.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 방역·예방조치를 마련 시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이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가 신설되었음.

또한 감염병 방역 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되었음.

이에 개정사항을 조례상 반영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 감염병 확산 및 방역 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에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감염병 방역 및 예방 조치를 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체육시설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의 노력 의무를 반영함(안 제4조제2항 신설).
- 나. 시장은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관내 체육시설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 및 예방 조치를 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이 원활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재정 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관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2. ~ 13. (생 략)</p> <p>제4조(책무)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18조(재정 지원) ①·②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p>2. ~ 13. (현행과 같음)</p> <p>제4조(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시장은 관내 체육시설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 및 예방 조치를 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이 원활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8조(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감염병 확산 및 방역</p>

조치 등으로 관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서번호	2021072700000010
------	------------------

비용추계서

요청인 : 정진술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이혜린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7.27	
회신일 : 직접입력	내용문의 : 02-2180-7955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목 차

- I. 비용추계 요약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제3항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관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제18조제3항의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관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 비용

나. 전제

- 지원비는 2020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사업비를 참고·준용하여 추계
- 민간 체육시설은 2020년 기준 11,317개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참고) 2020년 민간체육시설 현황

합계	신고업							자유업			
	소계	당구장	체력 단련장	체육도장	골프 연습장	수영장	기타 시설*	소계	탁구장	볼링장	GX 시설*
11,317	10,115	3,273	2,524	2,173	1,838	125	182	1,202	324	138	740

※ 기타시설 : 종합체육시설 91, 무도학원 64, 무도장 10, 빙상장 13, 썰매장 3, 요트장 1

※ GX시설 : 줌바, 태보, 요가, 에어로빅 등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관내체육시설에 임대료, 공공요금 등 고정경비 지출을 위한 7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1차 지급 후 2차 지급 전 폐업 시 지원금 미지급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기간을 고려하여 1년으로 추계

라. 방법

- 서울시 예산서, 사업별설명서, 업무보고 자료 및 담당자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제18조제3항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관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지원비용

2. 세부추계내역

- 생존자원 지원비 ≙ 15,843,800천원
= 700,000원*2개월*11,317개소

※생존자원지원비는 2020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사업비를 준용하여 추계

[붙임1] 동 조례안 관련 서울시 기 추진사업

(단위 : 백만원)

주관부서	2020년 예산	사업 내용	관련 조항
노동민생정책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575,5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소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700,000원*2개월*410,400개소 ○ 운영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제근로 인력지원 2,496,000원*5명*25개구*2개월 -사업 홍보 등 지원 400,000원*2개소*425개동 -컴퓨터 등 사무기기 임차지원 500,000원*5개*25개구 	제18조제3항

자료 :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제출 자료 및 「2020년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실행계획」(20.5.) 제작성